

공동계약제도 해설 (II)

최 두 선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행정사무관

지난호에서 공동계약제도의 의의, 이행 방식, 수의계약체결 시 공동계약 등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이번호에서도 공동계약제도에 관한 내용을 계속 알아보기로 하겠다.

I.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1.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

공사의 공동계약제도 중 시·도 단위 지방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비율 참가토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94. 6. 30일자로 지방중소업체와 대기업체가 의무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지방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다만 당해 시·도 구역 내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의무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 특성을 고려하고 지방중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상공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광역: 추정가격 252억원 미만 · 기초: 제한 없음.
지방업체 참여비율별도	규정이 없음.	· 40% 이상 지방업체 참여.
관련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집행기준(예규 제67호)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기준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실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개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금액에 대하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범위가 좁거나 개방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에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 계열회사와의 공동계약 금지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그 외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건설업체가 각각의 광역시·도에 계열회사를 두고 동계열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당초 지역중소업체와 공동계약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계열회사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시 계열회사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의 여부, 즉 2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 지의 여부는 동일인이 사실상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동 법은 동일인이 단독 또는 아래의 1의자와 합하여 당해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최다 출자자에 한함)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任免)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음.

○상기에서의 아래의 1인의 자라 함은 ①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②비영리법인, ③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에 의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④임원을 말한다.

3.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특징

(1) 입찰 등록 후 입찰 전 부도업체의 부도발생 시 처리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조건으로 발주된 공사의 입찰 등록 후 입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부도가 발생된 경우, 동 구성원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로 교체하여 입찰이 가능한 지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 시 공동수급체를 포함해야 하는 지역업체의 수를 명시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부도가 발생한 업체를 구성

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한다면 계약 후 동 업체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므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주자는 입찰 후 적격심사 전에 지역업체의 부도가 발생된 경우, 당해 지역의 다른 업체로 교체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관서 및 구성원 간에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새로 교체되는 지역업체와 당초 구성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와의 수행능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계약체결 후 지역업체가

부도로 탈퇴하는 경우 처리

입찰 공고상 의무적으로 지역업체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최소한 일정 지분을 지역업체에 배분하게 한 경우 지역업체 중 일부가 부도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게 되면 추가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영입하여야 하는 지 또는 탈퇴한 업체의 지분을 잔여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있다면 잔여구성원중 동 지역업체가 탈퇴한 구성원 지분 모두를 승계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시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참가요건이기는 하나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면허 등과 같은 계약이행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탈퇴된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구성원의 당초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탈퇴된 경우 동 지역업체의 출자비율은 잔존지역업체만이 이행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용역, 물품계약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여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규정은 당초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건설업 외에 전기공사 등 공사분야에는 적용되나, 용역이나 물품제조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 논리상 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은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인 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제도는 일면 타 지역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II. 공동수급체 구성원

1. 개 념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에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성되며 입찰등록시 입찰참가신청서에 동 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는 협정은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일정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결성된 실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연명 날인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다 이 형태는 모든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다수의 구성원 중 대표자가 외견상 단독으로 수주하고 계약의 이행은 공동으로 하는 “익명(匿名)공동도급”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공동계약과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권에 있어 대법원은 “공동수급체는 민법

상 조합에 해당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써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 참고 : 공동수급체와 민법상 조합의 비교 ●

구분	공동수급체	민법상 조합
의 의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단체
목 적	· 수주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	· 목적에는 제한이 없으며 영리사업에 한하지 않음, 다만 공동 사업임을 요하므로 이익은 전원에게 배분
출자 등	· 금전적 출자뿐만 아니라 노무, 자재 등 전반적으로 이행에 참여해야 함. · 공사 이행중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손실을 공제한 잔액으로 반환	·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공유에 속함. · 조합원은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한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없음.
책 임	· 공동이행방식 : 연대책임, 탈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을 짐. · 분담이행방식 : 원칙적으로는 각자 책임	· 조합원 중 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조합원이 균등하여 책임을 짐.
대외행위	· 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짐	· 대표기관은 없으며 대리권을 가진 업무집행자가 외부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함.
탈 퇴	·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구성원의 경우 절차를 거쳐 탈퇴 (임의 탈퇴 불가능)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가능

2. 공동수급체의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시기

가. 실질적 구성시기

공동수급체 구성은 구성원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구성된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건별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입찰 공고 후부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공동수급체의 현장설명 참가관련 유권해석을 보면 “공사 입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수급체를 구성할 구성원 중 현장설명 참가자격(면허, 국가기술자격수첩 등)이 있는 일부구성원이 동 설명에 참가하였다면 동 수급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현장설명 전에 공동수급체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나. 대외적 구성시기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 대외적으로는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체의 실체가 나타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이행능력평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전인 PQ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체 현황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므로 입찰등록 시 제출하게 하는 일반적 공사입찰의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그 뜻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라. 최근의 경향

최근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 시행과 토건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발주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위에서 설명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이행방식에 따른 자격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턴키공사(일괄입찰공사) 또는 일반공사라 하더라도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각각의 관련법령에 의한 여러 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통합발주를 하더라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공사를 통합 발주하면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왜냐하면 구성원 각각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면 대규모 건설업체 몇 개 외에는 공동수급체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대상미만이 되어 영 제7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은 입찰 공고 등에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요건(토·건, 조경, 전기 등)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이외의 구성원(지역업체 등)은 토목 또는 건축면허만 있으면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원칙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방법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되는 때에는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여구성원은 계약이행에 요구되는 자격 중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시공을 하지 못하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시공을 하게 되거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 구성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할 것이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발주기관이 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규모, 수주 가능성,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관리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보호·육

성 또는 기술이전 촉진이라는 공동계약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 '95년도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개정 시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구성원 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업체가 자유스럽게 공사의 이행 등에 적합한 구성원 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 시행과 더불어 지역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대형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가 20개 업체에 달하는 등 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아닌 수주를 위한 배분적 공동수급체 구성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스스로 구성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업체들이 오히려 발주기관이 구성원 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97. 1. 1자 동 예규 개정 시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구성원 수를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각 기관에서 발주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제한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의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조건으로 발주하면서 보통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대하여 1:2, 또는 1:3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타 지역업체 1개에 해당지역업체 2개 또는 3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 공동수급체 중복참가 금지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여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1개의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물론 입찰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는 것이므로 대표자 이외에는 중복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경우 구성원인 지역업체가 입찰을 주도해나가는 경향으로 볼 때는 이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으며 공동계약의 취지에 따라 많은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계약담당자가 당초 입

찰등록 업무 시 이를 발견하지 못해 1개의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하여 입찰을 한 경우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입찰무효 규정에는 1개의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하여 입찰을 한 경우 각각의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입찰자체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 담당자의 업무착오가 치유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1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 각각의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의 수주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출자지분 등을 비교하면 타 구성원에 비하여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업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1)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

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

종전에는 실적제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만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대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97. 1. 1 자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개정 시 현행과 같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입찰공고에 실적이외에도 시공능력 공시액, 기술보유상황, 또는 등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동 자격을 갖춘 자만이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PQ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체

2000. 12. 27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PQ대상공사의 낙찰제도를 적격심사낙찰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변경하였는데 동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저가수주가 예상되어, 저가수주에 따른 공사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사실적 등 경험 많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공사

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2001.7.2 자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개정 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공사금액(추정가격기준)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금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최근 10년 동안 1배 이상인 업체

실적을 보유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적을 보유한 자만이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없어도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등의 경우 공사금액(추정가격기준)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실적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실적을 보유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2001.7.2자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개정 시 규정하였다.

라. 기타 입찰공고 등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하는 경우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한다.”라고 정하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구성원 간에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국가계약법령상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약하여 공동수급체 대표를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성원간에 협약하여 공동수급체를 정하는 것 이라기 보다는 대표자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나머지 구성원을 선택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형업체간의 공동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리 · 의무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 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입찰 등 참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PQ서류제출, 입찰등록, 입찰 등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PQ서류제출, 현장설명 참가, 입찰등록, 입찰참여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계약체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연명 날인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명(顯名)공동도급방식을 취하고 있어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단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대가지급 청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동계약에 있어 선금 · 대가 등을 지

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즉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가지고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경우 대금청구 시에는 국세징수법령에 의하여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바,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타 구성원이 기성대가 등을 수령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부터 선금·대가 등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금액조정 청구

국가계약법령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물가변동, 설

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마. 기타 준공서류 제출 등

국가계약법령상 공동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준공서류 제출, 검사시수검 등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취하여야 하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이를 수행한다 할 것이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PQ의 경우에는 PQ심사서류제출시 제출하는 공동수급현황표상)에 처음으로 표시하게 된다.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대표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가. 대표자의 변경 절차 등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잔여구성원이 대표자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잔여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의 대위시공) 요건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잔여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표자도 당해 공사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구성원 모두가 면허, 시공능력공시액 등 당해 계약의 이행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실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출자비율, 보유실적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실적)에 가장 유사한 업체가 대

표자로 선임 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잔여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공시액 등 당해 계약의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의 대위시공) 요건이 발생하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공동수급체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탈퇴하는 경우 타분담구성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의 대위시공) 요건이 우선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거부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있지 않은 경우로서 분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

건을 갖추고 있다면 분담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표자도 당해 공사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구성원 모두가 면허, 시공능력공시액 등 당해 계약의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구성원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면 추가로 구성원이 된 업체가 대표자로 선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발주기관의 조치

발주기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이 대표자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자격 등을 심사한 후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변경계약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당초 계약서와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수정·날인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무난하리라고 본다.

다음호에서도 공동계약제도에 관하여 계속하기로 하겠다.

재정 토막상식

개발부담금제(開發負擔金制)

택지개발, 공업단지, 산업기지, 관광단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스키장 조성 등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 1989년에 입법화해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면 1993년에 토지이용규제 완화조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에 의한 땅값 상승 이익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담금 산출 방식은 개발완료시점지가에서 취득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지가 등을 제외한 이익의 50%, 부과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도시가 200평 이상, 그외 도시는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해설 (II)

김 정 섭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재정투융자담당

9. 재심사 요건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추진과정상 사업금액의 증액, 위치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업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심사 요건은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상 재심사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의무적인 재심사 대상사업〉

- 투·융자 심사완료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사업시행 이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함
- 당초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 원칙 : 당초 심사기관에서 재심사항
- * 총사업비가 시·군·구의 경우 3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사업은 시·도심사
(의존재원이 수반되어 증가된 경우에 한함)
- * 시·도의 경우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사업은 중앙심사
(의존재원이 수반되어 증가된 경우에 한함)

예시)

- ① ○○도의 사업으로 당초 150억원에서 사업규모가 80억원(국비 40, 도비 40) 증가된 경우, 재심사 여부
 - 재심사 대상 : 당초 심사금액 대비 50% 이상 증가사업
 - 심사기관 : 중앙심사
 - 의존재원인 국비 40억원이 수반되어 사업규모가 증가
 - 총사업비가 230억으로 중앙심사대상인 200억원을 초과
- ② ○○도의 사업으로 당초 150억원에서 사업규모가 80억원(도비 80) 증가된 경우, 재심사 여부
 - 재심사 대상 : 당초 심사금액 대비 50% 이상 증가사업
 - 심사기관 : 도심사(당초 심사기관)
 - 총사업비가 230억으로 중앙심사대상인 200억원을 초과되었으나 증가액 전

부가 자체재원인 도비로 증액

<사업비가 50% 미만으로 늘어난 사업의 재심사 여부>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재심사 대상임
- ※ 다만, 계획수립시 단가산정 착오 및 물가변동 또는 사업규모 변동없이 여건변동에 의한 공종이 증가되어 사업비만 증액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 단서조항 해설

- ① 물가변동 : 건설자재 등의 구매에 있어 물가상승·하락으로 인한 당초 산출내역서에 비해 변동이 생긴 경우에만 한함
주의) 토지보상비 증액 등은 물가변동에 해당되지 않음
 - ② 공종증가 :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공종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함
- (1) 시군구심사 : 당초 시·군·구에서 심사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증가분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총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시·도에 심사의뢰(의존재원이 수반되어 증가된 경우에 한함)
 - (2) 시도심사 : 당초 시·도에서 심사한 사

업으로서 사업비 증가분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심사(의존재원이 수반되어 증가된 경우에 한함)

(3) 행정자치부심사 :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00억 이상 늘어난 사업

(4) 당초 10억원미만 사업으로 심사대상사업이 아니었으나 실시 설계 확정이후 사업비가 10억원이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에 투·융자심사 실시

예시)

① ○○도의 사업으로 당초 150억원에서 사업규모가 60억원(국비 40, 도비 20) 증가된 경우, 재심사 여부

- 재심사 대상 : 사업비 증가액이 60억원으로 30억원이상에 해당

- 심사기관 : 중앙심사

· 의존재원인 국비 40억원이 수반되어 사업규모가 증가

· 총사업비가 210억으로 중앙심사대상인 200억원을 초과

② ○○도의 사업으로 당초 210억원에서 사업규모가 400억원(국비 90, 도비 100) 증가된 경우, 재심사 여부

- 재심사 대상이 아님

· 당초 심사금액 대비 50% 미만 증가하였고 증가액이 190억원으로 행정자치부 중앙심사 재심사요건인 200억원이상 증액에도 해당되지 않음

③ ○○도의 사업으로 당초 150억원에서 사업규모가 60억원(도비 60) 증가된 경우, 재심사 여부

- 재심사 대상 : 사업비 증가액이 60억원으로 30억원이상에 해당

- 심사기관 : 도심사(당초심사기관)

· 증가액 전부가 도비로 의존재원이 수반되지 않음

<기타 사업재원이 변경되는 경우>

○ 당초에는 전액 당해 자치단체재원으로 투·융자심사 실시후 국비나, 민간자본, 기타(기금, 시·도지원금 등) 재원으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한 경우

※ 이 경우 실시설계이후 또는 설계변경 이후 변경된 부분은 시공이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해야 함

※ 기타재원에는 지방채 발행액도 포함됨

10. 투자심사 기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투자사업은 민간의

투자사업과 달리 단순히 비용-편익(B/C) 분석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을 통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만을 시행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사업은 수익성과 별개로 주민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카지노 등 관광·유흥성사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의 근본취지에 배치되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은 그 특성상 단일한 투자심사기준을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바, 수익성 여부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계량적인 기법을 활용하되, 국가정책과의 합목적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현행 투자심사시 주요활용지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 ⇒ 심사기준 : 부처별 중장기계획에 해당사업의 포함여부

나.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개별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 (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 ⇒ 심사기준 : 해당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다.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양여금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 지방비부담(또는 확보) 능력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 ⇒ 심사기준 : 해당 자치단체의 신규투자 가용재원과 투융자심사신청사업 규모와의 비교
- ※ 신규투자가용재원 : 세출예산총액 - 경상비 - 의존재원사업비 - 자체재원사업비-예비비
- ※ 가용재원 현황서식은 별첨 참조

라.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 ⇒ 심사기준 : B/C분석 등 타당성 분석 결과 수지 전망 등 자료

※ B/C분석(Cost-Benefit Analysis)

- 특정 사업의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비교하는 방식으로 공공투자 타당성 분석시 대표적인 기법

※ B/C분석 기법에 의한 수지전망 서식은 별첨 참조

● 별첨 : 가용자원 현황 서식(예시) ●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세입	세입합계	39,350	46,136	41,376	45,000	45,385
	(I) 자체자원	소 계	32,373	34,213	31,850	33,201
		지방세	20,089	19,223	20,351	22,415
		세외수입	10,750	13,613	9,753	8,310
		재정보조금	0	0	0	0
		교부세	1,534	1,377	1,746	2,476
	의존자원	소 계	6,977	11,923	9,526	12,184
		국비보조금	5,080	7,388	7,726	10,364
		도비보조금	0	0	0	0
		양여금	853	859	0	0
		지방채	1,044	3,676	1,800	1,000
세출	세출합계(II)	32,653	34,345	32,855	33,538	32,721
	경상비	인건비	1,494	1,649	2,288	2,936
		경상적경비	1,772	1,872	1,694	1,729
	의존자원사업	의존자원	6,977	11,923	9,526	12,184
		지방비부담금	869	1,226	1,289	1,595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2,813	3,649	3,533	1,878
		채무부담행위	844	1,303	1,726	845
	예비비등	예비비	0	463	452	391
		기타	17,884	12,260	12,347	11,163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자체 사업 가용 재원	자체사업재원계(III)	6,697	11,791	7,909	9,793	10,644
	소규모사업(시군구 10억미 만사업, 시도 20억원미만사업)	762	901	450	500	600
	계속사업(기투자사업)	5,058	9,604	6,466	8,333	9,031
	투자심사제외사업	537	689	559	560	563
	시군구지원사업	340	597	434	400	450
	신규투자가용재원(Ⅰ-Ⅱ-Ⅲ)	0	0	612	1,669	2,020

● 별첨 : B/C분석(예시) ●

(단위 : 천원)

구 분		준공년도	(Y)Y+1	Y+2	Y+3	Y+4
수입 (A)	계		1,700	2,350	3,000	3,750
	○○입장료		300	400	400	500
	○○판매료		300	300	400	500
	○○임대료		1,100	1,650	2,200	2,750
지출 (B)	계		1,900	2,420	3,000	3,650
	인 건 비		500	520	550	600
	시설운영비		200	200	250	250
	○○물품 구입비		200	200	200	300
	○○용품 구입비		1,000	1,500	2,000	2,500
손 익(C=A-B)			-200	-70	0	100

□ 수지전망 : 2011년부터 관광객 50만명 유치로 순수익 1억 전망

※ 입장료 : 1인당 ○○○원

판매료 : 1인당 ○○○원

임대료 : m²당 ○○○천원

계약직 인건비 : 연봉제 ○○백만원

시설운영비 : m²당 ○○○천원

마.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심사기준 : 투자사업우선순위표상 순위 등을 감안, 판단

● 별첨 : 가용자원 현황 서식(예시)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계		기투자		2005		2006		2007이후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계	3건		2,228	749	185	—	600	709	722	40	721	—	
1	○○ 도로확 · 포장	L=4.81km B=20m	2003 ~ 2008	588	169	145	0	0	169	222	0	221	—	상습정체 구간해소
2	○○ IT 업무 지구 개발 및 입지지원	661천㎡	2004 ~ 2009	1,500	500	—	—	500	500	500	—	500	—	○○신도시 개 발에 따른 IT산 업 기반 구축
3	○○ 연구시설 건립3건	64천㎡	2004 ~ 2006	140	80	40	—	100	40	—	40	—	—	○○ 기술개발 기반 구축

바.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
- 사업요구도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

(예) 도로포장율, 인구증가율, 상·하수도 보급율 등

⇒ 심사기준 :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목표 단위 제시, 판단

● 인구 증감율(예시) ●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예상
인구수 (천명)	291	293	297	299	303
증가율 (%)	2.1	0.6	1.4	0.7	1.2

- ○○시 5년간 평균 인구증감율 : 1.6%

※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년도/전년도*100

사.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수혜인구, 같은조건의 사업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 · 사업비의 적정산출여부 검토

- 앞으로 수요추세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심사기준 :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을 기초로 적정성 여부 판단

※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은 별첨 참조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기타 국내 · 외 경기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등

⇒ 심사기준 : 상기의 심사기준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아. 종합적인 평가 · 분석

-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의 승인취득, 영향평가 실시등 사업시행준비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착수준비

● 별첨 :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50
전시장 치비	소 계		20
		1) 부스 설치비(500개)	
		2) 전시관 장식 및 부대시설비 · 전시관 장식, 부전시관(천막), 운영관(천막), 푸드코트(천막), 휴게시설(천막), 간이화장실, 음료대 등	1.7 18.3
지급 수수료	소 계		2
		1) 행사기획 용역비	1
		2) 장비임차비 · 앰프, 스피커 등 1,200개×72,000원 · 이벤트용 책상, 의자 1,200개×72,000원	1
광고 선전비	소 계		8.2
		1) 신문지상 광고 : 중앙 및 지방지 등	2.1
		2) TV광고 : 중앙 및 지방방송 등	1.3
		3) 에드벌론, 선전탑, 가두광고판, 전광판 등 설치	2.0
		4) 전단지, 팸플렛, 현수막 등 제작	0.2
		5) 유선방송 자막광고	0.1
		6) 홍보용비디오, CD, 홈페이지 제작 등	2.5
바이어 유치비	소 계		4.9
		1) 해외기업 유치섭외, 상담알선	0.2
		2) 해외 귀빈(CEO등) 초청경비	1.2
		3)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3
		4) 바이어 초청 섭외, 상담알선	0.5
인건비	소 계		2
		1) 조직운영 인건비 등	1
		2) 도우미 자원봉사자	1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잡비	소 계		3.8
		1) 부대시설 운영비	1
		· 전시장, 회의장, 테마관, 프레스센터 운영, 행사사무용품 등	1
		2) 편의시설 운영	
		· 휴게소, 셔틀버스, 상황실, 안내실 운영	
여비	소 계		0.7
		1) 국내 500,000원×100회	0.5
		2) 해외 3,000,000원×4인×2회	0.2
부대 행사비	소 계		8.4
		1) 이벤트 문화행사장 설치	1
		2) 이벤트 행사 운영	1.2
		3) 예술제 행사	1.5
		4) 자매도시 VIP, 해외기자 초청	1
		5) 오찬·만찬	0.5
		6) 주요명소 투어	0.2
		7) 부대시설 운영비	1
		8) 개·폐막식 행사비	2
		· 전야제, 축하공연, 이벤트행사	

